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오정보 단속을 요청할 수 있나?

상윤모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들어가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Murthy v. Missouri’ 판결에서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오정보(Misinformation)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¹⁾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당시 조 바이든(J. Biden) 미국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상의 코로나-19에 대한 오정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경고했고, 실제 백악관 관계자들은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에게 백신 및 코로나-19 관련 오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²⁾

극우 음모 웹사이트 ‘게이트웨이 펀딧(The Gateway Pundit)’의 설립자 짐 호프트(J. Hoft)와 루이지애나(Louisiana) 주(州), 미주리(Missouri) 주의 주 관리들과 개인들을 포함한 원고들은 수십 명의 행정부 관계자들과 연방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³⁾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셜 미디어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오정보를 삭제하라

1) ‘Murthy v. Missouri’, 603 US ____ (2024).

2) URL: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7870778>

3) URL: <https://www.cfr.org/article/supreme-court-was-right-murthy-v-missouri>

는 요구를 함으로써 보수층을 침묵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⁴⁾

원고들은 미국 연방기관과 공무원들이 2020년 대선 당시 코로나-19의 기원, 마스크와 백신의 효능, 선거의 공정성 등 특정 주제에 대한 보수 성향의 발언을 검열하는 데 가담했다고 주장했다.⁵⁾ 이들은 또한 정부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 개정과 같은 규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위협과 공개적 성명을 통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일정한 콘텐츠를 억제하도록 유도했으며, 이에 따라 자신들의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⁶⁾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거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오정보의 폐해가 지속해서 심화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⁷⁾ 인공지능을 활용한 거짓 정보의 손쉬운 제작과 유통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 특히 미국 사회는 지난 몇 년간 외국의 적대 세력이 딥페이크(deepfake)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생성된 오정보 및 허위정보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시민 담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올해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함의는 매우 크다.⁸⁾ 아래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Murthy v. Missouri’ 판결의 주요 내용 분석⁹⁾

‘Murthy v. Missouri’ 판결의 경우 정부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 간의 관계, 그리고 온라인상의 언론 및 개인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content moderation)’ 사이의 관계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 침해를 다루는 것은 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 사기업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자체의 행위나 결정은 「수정헌법 제1조」의 침해를 다룰 소지가 없다. 이 판결에서는 연방정부가 사기업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오정보의 유포를 막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결국 해당 사기업의 콘텐츠 관리와 관련된 결정을 정부 차원의 조치로 바꾸는 것이 되어 플랫폼 사용자의 「수정헌법 제1조」 침해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¹⁰⁾ 결론적으로, 이 판

4) URL: <https://www.theguardian.com/us-news/ng-interactive/2024/jun/26/supreme-court-decision-social-media-misinformation>

5) ‘Murthy v. Missouri’, 603 US ____ (2024). <https://www.oyez.org/cases/2023/23-411>

6) ‘Murthy v. Missouri’, 603 US ____ (2024). <https://www.oyez.org/cases/2023/23-411>

7) URL: <https://www.weforum.org/agenda/2024/01/ai-disinformation-global-risks/>

8) URL: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3/12/17/ai-fake-news-misinformation/>

9) 해당 부분은 ‘Murthy v. Missouri’, 603 US ____ (2024)의 내용을 발췌 및 요약, 정리한 것이다.

10) ‘Murthy v. Missouri’, 603 US ____ (2024). URL: <https://www.oyez.org/cases/2023/23-411>

결은 개인 및 주 원고 모두 피고들에 대한 금지명령(injunction)을 구할 미국 「헌법」 제3조의 자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절차적 문제와 소송 적격성(standing) 여부에 관한 법리적 논쟁에 집중하여 내려졌다.

주요 쟁점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판결에서는 연방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정부의 이러한 압력이 「수정헌법 제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아울러 원고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러한 피해가 정부의 행위와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정부와 소셜 미디어의 상호작용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독립적인 콘텐츠 관리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정부 관계자들의 특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금지명령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 또한 다루어졌다.

다수 의견의 주장 및 논리

다수 의견은 원고들이 소송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즉,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가했다는 압력이 해당 플랫폼이 원고들의 콘텐츠를 억제한 것과 직접 관련됨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부의 행위로 인해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피해를 보았음을 입증하여야 인정되는 소송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일련의 행위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압력이 있기 전에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자발적으로 콘텐츠 억제 정책을 강화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인 인과관계의 입증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이 판결에서는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도 원고였는데, 원고들은 루이지애나주 대변인이 페이스북(Facebook)에 올린 어린이와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포스팅에 대해 페이스북이 콘텐츠 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들은 언제 페이스북이 루이지애나주 대변인의 포스팅에 대해 행동을 취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 중 한 명인 짐 호프트는 소송에서 트위터(현 X)가 동의 없이 사적이고 성적으로 은밀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 자체 규정에 따라 콘텐츠 관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과거 자신이 입었다는 이러한 피해가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또는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 판결에서는 인과관계(causal link)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주장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금지명령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반대 의견의 주장 및 논리

이 판결에서 클라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새뮤얼 알리토(Samuel A. Alito), 그리고 닐 고서치(Neil M. Gorsuch)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가한 압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는 결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정부가 취한 행동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압력과 강요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행동은 사기업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왜곡시켰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과 달리 반대 의견은 이 소송의 원고들이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실제적 피해를 보았음을 입증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다수 의견처럼 소송 적격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정부

의 압력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은 원고들이 앞으로도 정부의 압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예방적 조치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행위로 인해 앞으로도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지명령을 통해 해당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소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원고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정부의 압박을 받아 자신들의 표현을 억제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입증에 실패한 원고들은 정부의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적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가 온라인상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플랫폼에 통보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플랫폼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거짓정보의 문제는 미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또한 오정보로 인해 혼란을 치르고 있으며, 최근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런 만큼 미국 정부의 오정보에 대한 대응과 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에 대해 간섭을 하는 주 법률들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다룬 'Moody v. NetChoice, LLC' 판결 및 'NetChoice, LLC v. Paxton' 판결과 비슷한 시기에 나오면서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관행과 정부와 플랫폼의 관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더욱 촉발하였다.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그리고 영국과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은 플랫폼상의 불법 및 유해 정보로부터 자국의 시민들을 더 잘 보호하려는 해당 국가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열린 인터넷 혹은 자유주의적 인터넷이라는 가치가 인터넷 산업 발전 초창기의 논리였다면, 최근에는 '플랫폼화된 인터넷(platformized internet)' 시기를 지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규제된 인터넷(regulated internet)' 시기로 진입하였다는 평가가 존재한다.¹¹⁾ 실제 해외 주요 국가들이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내놓고 있는 각종 법률과 정책 보고서들은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패러다임이 예전과 비교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¹²⁾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구글(Google)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콘텐츠 삭제 요청과 관련된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 및 관련 공개 데이터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검열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삭제 요청이 많이 증가하였고 정부의 개입이 법원의 요청 건수를 앞지르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규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 판결의 결과만을 갖고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약해졌거나 정부의 플랫폼에 대한 간섭이 쉬워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소위 '탈진실' 시대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과의 협력적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는 부분에서 본 판결의 의의를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압력이 없어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공간 안에서 브랜드 관리를 위해 콘텐츠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¹⁴⁾ 소셜 미디어 플

11) Flew, T. (2021). *Regulating platforms*. John Wiley & Sons.

12) Popiel, P. (2023). The push to regulate digital markets and services. *Current History*, 122(840), 15-21.

13) Park, S., & Sang, Y. (2023). The changing role of nation states in online content governance: A case of Google's handling of government removal requests. *Policy & Internet*, 15(3), 351-369.

14) URL: <https://news.bloomberglaw.com/us-law-week/high-court-murthy-case-accepts-social-media-companies-autonomy>



랫폼의 콘텐츠 관리는 사기업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¹⁵⁾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지, 사기업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콘텐츠를 관리를 위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려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노스웨스턴(Northwestern)대학의 폴 가우더(Paul Gowder)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오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라는 정부의 압력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인풋(input)의 하나이지, 정부의 압력이 해당 기업의 콘텐츠 관리 결정을 통제하는 것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¹⁶⁾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 음란표현, 위증, 거짓 광고 등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최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정보와 허위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인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 것은 무척 어렵다. 또한, 현재 거짓처럼 보이는 사실이 나중에 진실로 밝혀질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고려할 때, 거짓된 표현 또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도 존재한다.¹⁷⁾ 우리 헌법재판소도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고, ‘허

15) URL: <https://news.bloomberglaw.com/us-law-week/high-court-murthy-case-accepts-social-media-companies-autonomy>

16) URL: <https://news.bloomberglaw.com/us-law-week/high-court-murthy-case-accepts-social-media-companies-autonomy>

17) 김가희 (2023).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의 허위사실 표현 개념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제28권 제1호, pp.101-133.

위사실의 표현'이 일정한 경우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¹⁸⁾ 허위사실을 객관적 허위와 주관적 허위로 나누어 그 취급을 달리하자는 주장도 있다.¹⁹⁾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이 끝난 사실에 대해서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²⁰⁾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가짜뉴스' 규제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좌우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명백한 오정보의 폐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힘들고, 정부와 플랫폼 모두 소셜 미디어 플랫폼상의 오정보에 대한 콘텐츠 관리와 관련하여 최선의 접근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

18) 헌법재판소 2010.12.28. 선고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19) URL: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69>

20) URL: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69>